



제 432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상주차장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제도 도입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70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제221487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노상주차장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제도 도입(안 제7조제5항 및 제8조의2 제1항제2호 신설)	3
※ 참고자료	11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221487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Ⅲ. 검토의견

1. 노상주차장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제도 도입(안 제7조제5항 및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에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 및 현장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자동차 주차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과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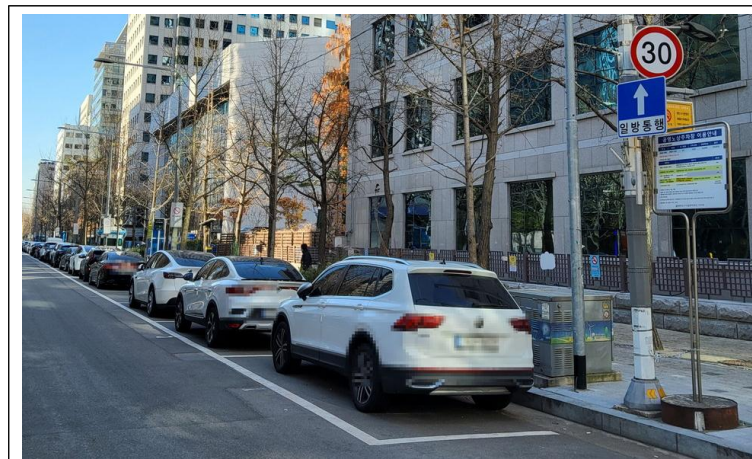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 및 현장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이하 “순찰차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u>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일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며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임¹⁾.

【 노상주차장 예시 】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7조제4항²⁾에서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에 화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고,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8조의2에서는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자동차의 이동을 명하거나(제1항), 운전자 등이 없으면 직접 주차방법 변경, 자동차 이동, 견인 또는 자동차이동 제한장치 설치(제2항) 등(이하 “이동명령 또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획 지정제도와 유사하게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 외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이동명령 또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상주차장은 도로변 등 도로 위에 설치되어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형태가 많은 특성상 외부와 구분되는 별도의 대지나 실내에 설치되어 출입구가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보다 치안이 요구되는 지역에

2)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설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주차
구획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됨.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주민 자동차,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유승용차, 영유아동반 자동차, 외교차량,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
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이동명령 또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지자체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관한 현행 법령 규정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
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
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
차구획의 지정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제주도, 서울시 강서구, 대전시 대덕구, 대구시 동구, 광주시 동구, 강원도 평창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참고. 참조)

【 노상주차장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예시 】

포항시	대전시 대덕구
	

즉,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노상주차장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법령상 노상주차장에는 인근주민 자동차, 화물차, 외교차량, 공동이용 자동차(쏘카 등),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음.

따라서, 지자체장은 필요 시 조례로써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 개정 실익은 제한적임.

노상주차장은 상업·주거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법률에 순찰차 주차전용구획 지정 및 견인 근거 등을 명시할 경우 주차수요 충돌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됨.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순찰차 등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서울특별시

노상주차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 노면에 설치된 한정된 자원으로, 도심 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공공기관(경찰) 전용구획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시민의 주차공간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허용될 경우, 소방차, 구급차, 지자체 단속차량 등 공익 목적을 가진 타 공공기관 차량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용구획 설치 요구가 이어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지자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제도 운영 사례

지자체	조례 규정
세종시	제13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용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용 경찰차”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112순찰·교통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을 말한다.
대구시 동구	제8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광주시 동구	제13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고,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시 강서구	제6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중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및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제외)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제5조의4(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지자체	조례 규정
서울시 서초구	제14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와 서초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성남시	제13조의2(경찰관서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원도 평창군	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포항시	제13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주도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밀집지역 및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시 대덕구	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